

의안번호	2215031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9.
추 계 번호	25F678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 시
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5조의3 신설 (공공기관에 대한 면제)	○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- 감면내용: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등기 시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과세되는 등록면허세(출자금의 0.1%) 및 지방교육세(등록면허세의 20%) 100% 면제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5조의3 신설 (공공기관에 대한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변동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00% 면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85조의3 신설)
-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등기 발생으로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가 발생
 -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6호 다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이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
 - 「지방세법」 제151조제1항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율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

- 개정안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부출자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
- 개정안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금 증가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를 원인으로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건수 및 세액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개정안에 따른 수입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